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2183번

○ 발 의 자 : 이순자 의원 외 11명

○ 발 의 일 : 2017년 10월 30일

○ 회 부 일 : 2017년 11월 01일

2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장학재단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(2017.11.06.~ 2017.11.13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(재)서울장학재단의 이사회 구성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임(안 12조 단서 신설)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이사회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<단서 신설>	제12조(이사회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제21조제2항)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는바,

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**위원회(**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**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**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안 제12조는 재단 이사회의 구성시에도 「양성평등 기본법」 조항을 준용하여 특정 성별이 60%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,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증대 차원에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사료됨.

○ '서울장학재단의 임원'은 감사직과 당연직을 포함한 13인이며, 11인의 이사회 중 당연직 2인을 제외하면 위촉직 이사는 9인으로, 위촉직 이사의 성별현황을 보면 여성 4인, 남성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, 본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구성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.

< 서울장학재단의 임원현황 >

2017년 10월말 기준

연번	성명	구분	주요 경력	비고
1	문OO	**이사장(비상임)**	· 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	**여**
2	구OO	**이사 (비상임)**	· 한국방송(KBS) 프로듀서	**남**
3	김OO	**이사 (비상임)**	· (주)오토 대표이사	**여**
4	박OO	**이사 (비상임)**	· (주)이랜드그룹 부회장	**여**
5	박OO	**이사 (비상임)**	·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	**남**
6	이OO	**이사 (비상임)**	· (주)꿈꾸는이상 대표	**남**
7	이OO	**이사 (비상임)**	· 전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	**남**
8	한OO	**이사 (비상임)**	· 미래사이언스대표이사	**여**
9	김OO	**이사 (비상임)**	·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	**남**
10	주OO	이사(당연직)	· 서울시 평생교육국장	남
11	정OO	이사(당연직)	·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	남
12	양OO	감사(비상임)	· 이정회계법인 대표	남
13	박OO	감사(당연직)	· 서울시 감사담당관	남

○ 다만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’로 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의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‘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의 이사회 구성시’로 확대하고 있어, 조례의 적용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○ 「대한민국 헌법」[1]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, 「양성평등 기본법」[2]은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[3]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※ (재)서울장학재단의 이사회를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, 「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[4], 「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정관」(제3장(임원) 및 제4장(이사회)) 및 「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운영규정」에서 이사회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, 이사회 구성시 특정 성별에 치우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.

---

1) **「대한민국 헌법」제11조**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2) **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1조(목적)** 이 법은 「대한민국헌법」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) **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양성평등"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,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

4) **「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**제8조제8조(정관) ① 재단의 **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**

4. 이사 및 감사,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○ 안 제12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‘노력한다’는 임의규정으로 서울장학재단이 이사회 구성시 재량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바, 「헌법」이념 및 상위법령의 목적을 준수토록 하면서,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(위촉의 권한) 및 출연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짐.

개 정 안
제12조(이사회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**노력한다.**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이념을 서울시의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의사결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상위법령의 목적을 적정하게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전 문 위 원	김 태 한
입법조사관	정 찬 일